

제18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2. 5. 31.(목) 10:00~

# 조례안 심사보고서

=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

산업건설위원회

## 【 목 차 】

1.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안 ..... 5

#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2. 5. 17.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위원회 회부 일자: 2012. 5. 17.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2. 5. 25.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제안이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이 2012. 1. 17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군에 위임된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은 물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지역경제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규정 신설 (안 제13조의2)
  -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 부터 오전 8시까지
  - 의무휴업일은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업과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개정 취지에 적당하게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매월 2회로 하며, 두번째 일요일과 네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가.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은 물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지역경제 상생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법적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정하므로 지역경제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써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타당성이 인정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5. 토론 요지: 해당없음

### 6.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8.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2. 5. 17.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위원회 회부 일자: 2012. 5. 17.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2. 5. 25.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제안이유

군내 출신이거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군내 제조업체 등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애향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고향 거창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고취하고, 군내 제조업체 등의 청년층 취업을 장려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1) 조례의 목적, 지원대상자의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2) 추천 및 심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3) 지원범위 및 시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4)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5) 장려금 수혜자 군정 홍보요원 위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가. 본 조례안은 군내 제조업체 등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애향장려금을 지원하여 고향을 아끼는 마음을 고취시키고 제조업체 등의 청년층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사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법적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 나. 이 조례안은 군내 제조업체 등의 취업을 장려하고 고향사랑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애향장려금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으나, 한 사람당 1회에 500천원 지급으로 소기(所期)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와 취업 대상업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원 대상자 심사에 혼란이 우려될 수 있으나, 군내 제조업체 등에 청년층이 취업을 하여 고향을 아끼는 마음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은 타당성이 인정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5. 토론 요지: 해당없음

### 6. 수정안 요지

-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안,
  - 제3조 제1항 제4호 “최근 6개월간 급여명세서”를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서”로
  - 제4조 제1항 “장려금 지원대상자 심사 순위는 장기근무경력자, 소득이 낮은 사람(최근 6개월간 받은 급여액과 재산세납부액) 순으로 한다.”를  
“장려금 지원대상자 심사 순위는 장기근무경력자, 소득이 낮은 사람(최근 6개월간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재산세납부액) 순으로 한다”로 수정.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